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



1. 배 경

■ 재활용품 수거대란 발생('18.4.1.) 이후,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「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」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 신고 의무화 추진

2. 법적근거

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('20.11.27. 시행)

- 생활폐기물배출자*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위·수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,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자체에 신고
 - *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
 - ※ 폐기물관리법 제68조 1항 제1의 2호: 제15조 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(1천만원 이하)

3. 신고품목

재활용폐기물 11종

■ 종이류, 유리병, 금속캔, 고철류, 플라스틱, 투명PET, 발포수지류, 비닐포장재, 의류, 전자제품(소형), 기타(잔재물 등) ※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품목은 제외

4. 신고사항

계약사항, 처리실적, 처리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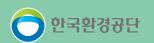
신고주체	신고항목	신고내용
공동주택 등 <u>생활폐기물을</u> <u>스스로 처리 하는 자</u>	계약사항	- 민간수거업체와의 계약 내용(단가, 기간, 품목 등) 신고 ※계약 변경 및 해지 내용 포함, 계약서 등록 필수
	처리실적	- 품목별 중량을 산출하여 월 단위 신고 ※ 중량산출 방법: ①배출자 직접계량, ②수거업체 실적 공유
	처리방법	- 배출된 폐기물의 처리 방법 신고 ※ 품목별 수집운반업체가 공급하는 재활용업체 등

5. 신고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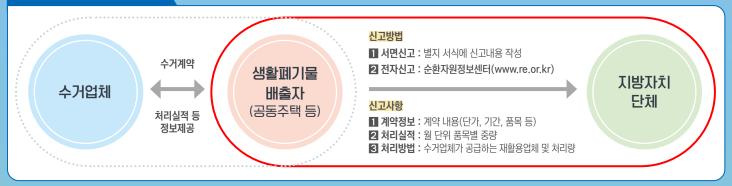
①전자신고 ②서면신고(신고자 편의에 따라 선택)

- (전자신고) 공단에서 운영하는 "**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(www.re.or.kr)**"을 통한 전자신고(매월 15일까지 전월 실적 신고)
- (서면신고)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**별지 서식을 활용하여 신고내용을 직접 작성**하고 지자체에 신고(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 신고)





6. 신고 체계도



7. Q&A

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주체는 누구인가요?

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'생활폐기물배출자'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며,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 직접 위탁 처리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.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업자(위탁 관리업 체)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신고 주체를 선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내용은 무엇인가요? Q2

> 생활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(품목별/월별 위탁 처리량)과 처리방법(품목별 재활용 업체 등), 계약(수탁처리업체 등)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

Q3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?

>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생활폐기물배출자 실적신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해 야 합니다. 또한 순환자원정보센터(www.re.or.kr)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'21년도 2월 말까지 신고하는 '20년도 처리실적(월별 위탁 처리량) 기준은 무엇인가요? **Q4**

법령 시행('20.11.27.) 이후 실적으로, '20년도 12월 처리실적을 신고합니다.

꼭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? Q5

>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구축한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은 생활폐기물배출자(수거업체의 참고실적 입력 기능 포함)와 자치단체 간 에 신고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. 따라서 가급적 시스템으로 신고하여 주시고,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.

시스템으로 신고할 때 가입자(실명인증)는 누구로 해야하나요? Q6

>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은 실제 재활용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업무 담당자가 해주시면 됩니다. 회원가입 후 정보수정에서 사용자 및 관 리주체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Q7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>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 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(1차)300만원 → (2차)500만원 → (3차)1,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·군·구청에 문의해주세요.

8. 연락처





